



Puget Sound Regional Council

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Puget Sound Regional Council 고충 처리

본 고충처리 절차는 1990년도 미국 장애인법 (“ADA”)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것은 **Puget Sound Regional Council**에 의한 서비스, 활동, 프로그램 또는 혜택의 제공에서 장애를 근거로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불만사항을 제출하고자 하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관의 인사 정책 (**Personnel Policy**)은 장애 차별에 대한 고용 관련 불만사항에 적용됩니다.

불만사항은 문서로 해야 하고, 진정인의 이름, 주소, 전화 번호 및 문제의 설명 등과 같이, 차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 요청 시에 장애인들을 위해 개인 인터뷰 또는 진정의 녹음 기록물과 같이 진정을 제출하는 대안적인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진정은 진정인 및 /또는 진정인의 지정인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주장된 위반 후 60 역일까지 다음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.

Thu Le

미국 장애인법 조정관/인적자원부 관리자

Puget Sound Regional Council

1011 Western Ave Ste 500

Seattle, WA 98104

진정의 접수 후 15역일 이내에, **Thu Le** 또는 **Thu Le**의 지정인이 진정인을 만나 진정과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할 것입니다. 회의 후 15역일 이내에, **Thu Le** 또는 **Thu Le**의 지정인은 서면으로,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, 큰 인쇄물,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와 같이 진정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할 것입니다. 응답은 **Puget Sound Regional Council**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며 진정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.

Thu Le 또는 그 지정인에 의한 응답이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, 진정인 및 /또는 진정인의 지정인은 그 응답을 받은 후 15역일 이내에 그 결정에 이의를 **부사무국장 (Deputy Executive Director)**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진정의 접수 후 15역일 이내에, **부사무국장 (Deputy Executive Director)** 또는 그의 지정인이 진정인을 만나 진정과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할 것입니다. 회의 후 15역일 이내에, **부사무국장 (Deputy Executive Director)** 또는 그의 지정인은 서면으로,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, 진정의 최종적 해결책과 함께 진정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할 것입니다.

Thu Le 또는 **Thu Le**의 지정인에 의해 접수된 모든 서면 진정들, **부사무국장 (Deputy Executive Director)** 또는 이런 두 담당자들의 응답은 **3년 이상 동안 Puget Sound Regional Council**에 의해 보유될 것입니다.